

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관리 기준

이 기준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(이하 “자본시장법”이라 한다)」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,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고객과의 이해상충 발생 및 회사 정보교류 차단 부문을 명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이 기준을 게시합니다.

I. 정보교류 차단 대상에 관한 사항 및 미공개중요정보 여부 식별기준

1.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

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.

- 1) 자본시장법 제 174 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- 2)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- 3)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
2. 미공개 중요정보 여부의 판단

- 1) 회사 내부통제기준 제 39 조 제 2 항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여부를 식별합니다.
- 2) 업무 수행 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인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 판단 의뢰 후 결정합니다.

3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제외

[1.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] 2) 중,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- 1)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2)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3)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4)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 신용정보
- 5) 회사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정보
- 6)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(준법감시인)의 승인을 받은 정보

[1.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] 3) 중,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- 1)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- 2)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5 영업일이 경과한 정보
- 3)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
II. 정보교류차단 부문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

1. 정보교류차단 부문 및 책임자

아래와 같이 상호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부문을 지정하고 책임자를 명확히 하여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.

- 1) 집합투자업 운용부문: 운용부문 총괄 책임자
- 2) 고유재산 운용부문: 고유재산 운용부문 총괄 책임자

2.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 및 담당임원

- A.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: 준법감시부서
- B.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: 준법감시인

3.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및 예외적 교류허용 대상

회사는 임원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·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 및 예외적 교류허용 대상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.

- A.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
 - i. 대표이사
 - ii.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
 - iii. 기타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문의 임원
- B. 예외적 교류허용 대상 및 기록관리
 - i. 정보교류차단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자
 - ii. 감사, 인사, 회계, 재무, 경영지원, 경영분석, 상품개발, 전산, 펀드운용지원, 법무,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 담당자
 - iii.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한 경우는 이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최소보존기간(5년) 이상 유지·관리 (기록유지사항: 정보수령자, 승인자, 정보수령 일시 및 해제일시, 교류정보 내용 등)

III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및 대응방안

1. 거래제한 상품목록 지정

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,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,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제한 상품목록으로 지정합니다. (기록유지: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 및 일시)

- A. 집합투자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투자 예정 또는 투자 중인 주식(주식관련사채 포함) 및 기타 금융투자상품
- B. 임직원의 투자 예정 또는 투자 중인 주식(주식관련사채 포함) 및 기타 금융투자상품
- C. 그 외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

2.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되는 거래의 유형 및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거래유형	대응방안
집합투자재산 및 고유재산간의 자산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교류	✓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상품에 대해 거래제한 목록지정 ✓ 거래제한 목록에 대하여는 임직원 자기매매 제한 등 조치 ✓ 고객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제한 상품 거래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필요 ✓ 사무공간 분리, 회의록 작성, 전산시스템 등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 등 효율적 방법 선택 시행 ✓ 각 부문간 부문별 책임자 지정 및 관리 ✓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✓ 관련 행위 조사 후 대응 후속조치 시행
미공개 중요정보 조사분석 자료를 이용한 고객자산 또는 고유자산 매매거래	✓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인지 즉시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제한 목록 지정 ✓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고 자기매매 제한 등 조치 ✓ 관련 행위 조사 후 대응 후속조치 시행

IV. 이해상충방지 정책 및 조치방안

회사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과 조치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- 1)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 차단 기준 게시
- 2)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 설정
- 3) 상시적 정보교류차단 장치 설치 운영
- 4)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 설치 운영
- 5)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
- 6) 임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내부통제 교육 실시
- 7)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 적정성 여부의 주기적인 점검 실시 등. 끝.